

장기화재보험 분쟁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과실여부—

1. 사건 개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펠트(보온덮개) 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K는 1985년 1월 공장 건물, 동 건물 내의 수용동산 및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H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이 종료되는 1986년 1월 H보험회사에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H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사 후 장기화재보험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고 일반화재보험계약을 권유한 바 있다. 동 시의 장기화재보험 인수거절사유는 보험의 목적 중 일부건물이 청약서에 기재된 블록조 슬레이트즙이 아니라 가연성 재료인 철파이프 루핑즙이라는 사실과 동산의 초과보험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실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그후 K는 상기 보험의 목적에 대해 Y보험회사와 장기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보험의 목적이 H보험회사측으로부터는 인수거절된 바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Y보험회사측에서는 H사의 인수거절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① 철골 슬레이트즙 평가건 1동 100평, 기계 및 시설 일체, 원자재 및 반·완제품 일



이 헤 구
(한국보험공사 조정과장)

제 보험금액 1억 3천만원 ② 블록조 슬레이트즙 평가건 1동 50평, 기계시설 일체, 원·부자재 및 원·반제품 일체 보험금액 2천만 원, 보험기간 '86. 1. 21~'91. 1. 21.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계약을 인수하였다.

1986. 4. 12: 20경 동 펠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공장측이 임의로 가설한 건물내 형광등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며 뒤 불꽃이 먼지 솜에 비화된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K는 Y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Y사에서는 이재조사 후, 계약자 K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동 계약을 상법 제651조 및 해당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Y사가 주장하는 고지

의무위반 사실이란 계약자 K가 계약 당시 일부 건물의 지붕이 가연성재료로 된 철파이프조 루핑즙이었음에도 이를 블록조 슬레이트즙 건물이라고 부실 고지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험 계약자 K는 Y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동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진정, 동 건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 되었다.

2. 당사자 쟁점

보험계약자 K는 Y사와 보험계약 당시 H사로부터 인수 거절된 바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Y사가 아무런 확인 절차나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계약에 응하였으므로 Y사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데 반해, Y사는 보험계약자 K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분명하므로 Y사의 면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H사에서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한 것은 ① H사의 장기화재보험계약 인수지침에 펠트제조업이 화재 위험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인수를 제한한 것이며 인수거절사유가 단순히 보험의 목적이나 가연성지붕(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점 ② 각사의 인수지침은 각 보험회사의 위험선별에 따른 견해와 회사의 경

영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각각의 보험의 목적에 대해 반드시 실사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점 ③계약 이후 사고직전까지도 사실과 상위한 증권내용에 대해 보험 계약자의 정정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보험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고지사항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므로 Y사의 해지사유는 정당한 것이었고 따라서 상법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판정요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피신청인인 Y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동 위원회의 판정요지는 아래와 같다.

「…… 본건 보험계약자 K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 Y사의 영업소장에게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K는 펠트제조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 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H사의 장기화재 보험으로부터 인수거절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등 위험 사정을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인 피신청인이 계약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받은 이상 동업 타사인 H사에 인수거절사유를 확인한다거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 위험의 인수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신청인

이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으로 피신청인 이이와 같은 주의를 해태하여 실제 위험상황을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중략)…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법 제651조 단서규정 및 해당 약관 제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고 기초한 해지행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과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지급판정에 대해 Y사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심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Y사는 1986. 7. 30 보험계약자 K에게 보험금 90,689,977원을 지급하였다.

5. 후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없다고 상법 제655조는 규정하고 있다.

본건과 관련된 분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보면 동 위원회가 상법 제651조의 규정을 보험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무규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쌍방 의무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 즉 동 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651조 단서 규정으로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보험자가 전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에만 의존하여 위험의 인수여부 등 위험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험측정에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조사를 함께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건은 표면상 고지의무위반이 문제시된 건이지만 위험의 선택과 실손보상이라는 손해보험회사 본래의 기능보다도 외형확대위주의 경영정책이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의 일단면을 보여준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에 있어서의 분쟁이 적정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없을 수 없겠으나, 반면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보험 자체에 대한 이미지 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의 위험상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